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여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6일, 김남희 의원 등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9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24. 11.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3. 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5. 3. 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김남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

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 총괄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¹⁾으로 하는 법률로서, 「채무자 회생법」 제32조의²⁾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취급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다만, 파산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이행 불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신용훼손에 대한 징벌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파산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업무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업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다수 존재함. 이는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³⁾은 결격사유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규정하는 기준으로 ①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②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③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④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상 기준에 비추어 개별법적으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파산자의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에서조차 파산자의 진입을 막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하도록 하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파산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성,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사유 규정을 통하여 진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각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를 규정한 해당 업무의 내용 및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인지, ②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개별 법률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함.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업무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

는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직무수행의 안정성보다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긴급전화센터 등의 종사자라는 직업은 파산자의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로서 이러한 직업의 진입을 막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하도록 하는 파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격기준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는 자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 ----- -----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5)에 따라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으로는 수수료·회비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으며, 배상책임을 위해 제25조제3항6)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③ ~ ⑤ (생략)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제24조의37)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재정능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제4조8) 및 제24조의39)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증보험가입, 중개사무소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 등 기본적으로 재정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파산자의 경우 인·허가 보증보험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한다.

②·③ (생략)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가입, 자본금 확보 등이 사실상 어려워 결혼중개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어 법 개정의 실익이 미미하고,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사전 자격제도가 없는 점, 업자 대부분이 영세 개인사업체로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전문성과 책임성이 수반되는 고액(중개수수료 평균 1,500만원) 서비스 계약행위를 수반함에 따라 재정상태 취약 시 서비스 중단 및 품질 저하, 환불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용자 및 외국 현지 상대방과 계약대금 집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재산관리를 받을 경우 안정적 법률관계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 3. (생략)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 9. (생략)	제6조(결격사유)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9. (현행과 같음)

아이돌보미는 현행법 제7조¹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해당 업무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직무수행의 안정성보다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¹¹⁾의 사회복지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3¹²⁾의 요양보호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¹³⁾ 제24조의3의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는

10)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6. (생략)

1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10. (생략)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 ③ (생략)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④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u><삭제></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청소년지도사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해당 자격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직무수행의 안정성보다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¹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청소년상담사에 대해서도 동법 제22조제2항¹⁵⁾에서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와 같은 취지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은 수련시설의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조(결격사유) -----

1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청소년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¹⁶⁾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이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요건으로 ① 해당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과 ②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등 경제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¹⁷⁾

1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¹⁸⁾에 따라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는 등 영리행위를 하고 있음.

이와 같이 ① 수련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정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②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용료 및 수련비용을 받는 등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③ 운영대표자¹⁹⁾는 해당 청소년시설의 인적·물적·재정적 관리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는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자 및 운영대

1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허가할 때 그 시설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1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19) 현행법 제14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표자는 수련시설 설치·운영 자금 조달 및 시설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제정안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행일을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정안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이고,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 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려 는 것임(안 부칙 제1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로 한
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 한다.	제1조(시행일) ----- <u>공포한 날</u>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u> 3. 4. (생략) ②·③ (생략)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 ----- ----- -----.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아이돌봄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 3. (생략) 4.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5. ~ 9. (생략)	제6조(결격사유)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9. (현행과 같음)

청소년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 5. (생략) ⑤ ~ ⑦ (생략)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 6. (생략)	제15조(결격사유) -----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6. (현행과 같음)